

이 보도자료는 2016. 8. 10.(수) 조간용으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2016. 8. 8.(월)

공보담당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자장검사 윤희식  
전화 02-3270-4302, 4322

자료 문의 : 식품의약조사부  
전화번호 : 02-3270-4309, 4329  
주책임자 : 부장검사 변철형

### 제목

**A제약사의 의약전문지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 수사 결과**  
**- 약 25억 9천만원 상당 리베이트 제공 혐의 등으로 총 34명 기소 -**

### 개요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 (단장 : 식품의약조사부장 변철형)은 A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을 수사하여, 의약전문지를 통해 약 25억 9천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A제약사 및 동 제약사 대표이사 등 前·現임원 6명, 범행에 가담한 의약전문지 5개·학술지 발행 업체 1개 및 각 대표이사,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5명 등 모두 3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前 A제약사 대표이사 2명(외국인)을 기소중지 하였음
- ※ 정부합동수사단은 2011. 4. 5.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관행 근절을 위해 검찰청, 보건복지부, 경찰청, 식약처, 국세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 7개 기관 합동으로 출범하였음
- 수사 결과, 최고 수준의 윤리경영을 내세우는 다국적 제약사도 불법 리베이트 제공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이를 감시·비판해야 할 의약전문지가 오히려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대행사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종합병원 의사들도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서울서부지검은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임

## 1

### 주요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 **[A 제약사]** 2011. 1. ~ 2016. 1.경까지 의약전문지를 통해 약 25.9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약사법위반**

※ A : 다국적 제약사의 한국지사로 '97년 설립, '15년 매출액 4,552억원(다국적 제약사 중 2위 규모)

- **[의약전문지 F]** 2011. 1. ~ 2015. 6.경까지 A제약사와 공모하여, A제약사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에서 A제약사 거래처 의사에게 약 11.7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약사법위반**

※ F : '99년 설립된 신문의 발행 및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

- **[학술지 발행 업체 H]** 2011. 3. ~ 2016. 1.경까지 A제약사와 공모하여, A제약사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에서 A제약사 거래처 의사에게 약 7.6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약사법위반**

※ H : 의학·과학 전문 학술지를 발행하는 다국적 회사의 한국지사로 '05년 설립

- **[대학병원 의사 IOO]** 2012. 3. ~ 2014. 9.경까지 A제약사가 의약전문지를 통해 제공하는 자문위원료 내지 좌담회 참가비 명목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약 2,599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의료법위반**

※ 상세내용은 별지 '주요 피의자별 범죄사실 요지' 참조

## 2

### 주요 리베이트 제공 수법

#### ● 의약전문지 등을 이용한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

- 'A제약사'는 '09. 3. ~ '11. 9.경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받던 중인 '10. 11.경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회사가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단속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 A제약사는 2011. 10.경 공정위로부터 『'06. 8. ~ '09. 3.경까지 거래처 의사들에게 식사 접대, 강연·자문 등 명목으로 총 7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 하여 과징금 약 23.5 억원을 부과받았음

- 그러던 중 의약전문지 5개와 학술지 발행업체 1개 등에 제품 광고 명목의 광고비를 집행한 후, 위 업체들을 통해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좌담회, 자문료 등을 빙자하여 불법 리베이트 제공

\* 의약전문지와 학술지 발행 업체는 행사 진행을 위한 식당 예약, 명패 부착 등 형식적인 업무만 담당하고, 참석 대상 의료인의 선정, 접촉, 행사 안내, 자료 제공 등 업무와 의료인에 대한 제공 금액 결정은 A제약사에서 담당

- 의약전문지 업체 등은 위와 같은 공정위 조사, 쌍벌제 시행에 맞추어 제약사의 거래처 의료인들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각종 명목의 행사를 대행한 후, 인건비·대행 수수료(Agency Fee) 포함 광고비 총액\* 대비 평균 30 ~ 50% 정도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남

\* 평균 광고비 : 좌담회(1회 500 ~ 600만원), 편집회의(1회 1,500 ~ 2,500만원) 등

<범행 도식도>



● 구체적인 리베이트 제공 수법

- (좌담회 참가비) 전문지의 기사 취재 형식을 가장\*하여, 'A제약사'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5~10명 내외의 의사들\*\*을 호텔 등 고급 식당으로 초대하여, 'A제약사' 관련 의약품의 효능 등에 대하여 논의토록 한 후, 1인당 30~50만원 상당의 참가비(일명 '거마비'라 함) 지급

\* 전문지 취재기자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A제약사에서 참석자 선정, 접촉, 행사장 안내 (교통수단 제공) 뿐만 아니라 논의 자료까지 사전에 준비, 제공하여 일부 참석하는 의사 중에는 전문지의 관여 자체를 모르고 제약사의 행사로만 아는 경우도 있었음

\*\* 참석하는 의사들은 사제 관계, 동문 관계 등으로 서로 간에 친분관계가 있었음

- (자문위원료) 'A제약사'에서 선정한 의사들을 전문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후 한 달에 100만원 상당의 자문위원료 지급

\* 지문한 사실이 없거나, 일부 지문(1년 전후한 지문기간 동안 2~3회)한 경우에도 형식적이거나, 그 지문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의 지문료 취득

- (편집회의 원고료) 전문지 내지 학술지 발행업체를 통해, 'A제약사'에서 선정한 의사들을 상대로 외국 논문 내지 외국 유명 학회지 번역 등을 의뢰하고, 관련 책자 발간을 위한 편집회의를 고급 식당 등에서 개최한 후, 1인당 50 ~ 100만원 상당의 원고료 내지 감수료 지급

\* 편집회의시 A제약사 임직원들이 참석하고, 발간된 책자는 A제약사로 송부되고 일반 판매된 사실이 없음

- (해외학회 참가 경비 지원) 'A제약사'에서 선정한 의사들을 전문지의 '해외학회 취재를 위한 객원 기자'로 위촉토록 한 후, 1인당 400 ~ 700만원 상당의 해외학회 참가를 위한 경비 지원

※ 본건 수사 과정에서 전문지 통한 해외학회 지원 뿐 만 아니라, 제약시간 자율협약인 공정경쟁 규약(제약사의 지원 대상 의사 선정에의 관여 금지)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제약사에서 해외학회 참가 경비를 지원해 준 사실이 확인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

### 3 수사의 의의

#### ● 다국적 제약사의 반복적, 관행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 확인

- 'A제약사'는 '09. 3. ~ '11. 9.경까지 공정위의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받던 중에도, 의약전문지나 학술지 발행업체를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래처 의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사실 확인

※ 본건 수사 과정에서 현재 A사의 호주 지사장 내지 계열사 사장으로 재직 중인 전직 외국인 대표이사 2명의 관여 정황이 확인되어 소환조사하고자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출석불응하여 기소중지 처분하였음

- 그 동안 최고 수준의 윤리경영을 강조해 오면서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한 다국적 제약사도 고질적인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사례로 이를 엄단하여 제약업계에 경종을 울림

● **의약전문지와 학술지 발행업체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가담 사실 확인**

-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감시·비판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약전문지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독립성, 공정성이 필요한 **학술지 발행업체** 조차도 수익을 위해\* 제약사의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엄단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림

\* 일부 업체들은 의료인 접대 등에 사용한다는 A제약사 직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해당 업체의 법인카드 내지 직원 개인카드를 대여해 준 후 수수료 30~50%를 붙여 광고비에서 정산 하였을 뿐만 아니라, A제약사 직원들이 의료인 접대 등에 사용한 영수증을 수수료 20~50%를 붙여 광고비에서 정산해 주었음

● **대학·종합병원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사실 확인**

- 그 동안의 리베이트 수사에서는 개원의가 주로 적발되었음에 반하여, 본건 수사에서는 **대학·종합병원 의사들이 주로 적발**됨으로써, 개원의 뿐만 아니라 **대학·종합병원 의사들도 리베이트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엄단함으로써 의료계에 경종을 울림

※ 수수 액수가 과다한 의사 15명은 구약식 하였음

## **4 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 **관련 부처에 약가 인하 및 행정처분 요청**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 공여 'A제약사'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의뢰

●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범에 대한 지속적 단속활동 추진**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식품·의약 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임 ☐

## 주요 피의자별 범죄사실 요지

순번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수사결과
1	A제약사	'11. 1. ~ '16. 1.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전문지를 통해 거래처 의사들에게 약 25.9억원 상당 제공	구공판
2	B○○(48세) 前 A제약사 대표이사(외국인) 現 계열사사장	'11. 7. ~ '13. 12.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전문지를 통해 거래처 의사에게 약 16.9억원 상당 제공	기소중지 출석불응 (외국거주)
3	C○○(45세) 前 A제약사 대표이사(외국인) 現 호주 지사장	'14. 1. ~ '15. 8.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전문지를 통해 거래처 의사에게 약 7.5억원 상당 제공	기소중지 출석불응 (외국거주)
4	D○○(47세) 現 A제약사 대표이사	'11. 1. ~ '13. 8. / '15. 9. ~ '16. 1. 부사장 내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전문지를 통해 거래처 의사에게 약 2.2억원 상당 제공	구공판
5	E○○(56세) 의약전문지 F사 대표이사	'11. 1. ~ '15. 6. A제약사와 공모하여 A제약사 거래처 의사들에게 좌담회 참가비, 자문위원료 등 명목으로 약 11.7억원 상당 제공	구공판
6	G○○(55세) 학술지 발행업체 H사 대표이사	'11. 3. ~ '16. 1. A제약사와 공모하여 A제약사 거래처 의사들에게 편집회의 원고료 등 명목으로 약 7.6억원 상당 제공	구공판
7	I○○(65세), 의사	'12. 3. ~ '14. 9. 의약품 처방대가로 27회에 걸쳐 자문위원료, 좌담회 참가비 등 명목으로 약 2,599만원 수수	구약식
8	J○○(39세), 의사	'11. 11. ~ '14. 4. 의약품 처방대가로 9회에 걸쳐 해외학회 지원, 좌담회 참가비 등 명목으로 약 2,385만원 수수	구약식